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2011.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전문연구원

마 정 화 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10
1.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10
가. 개관	10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0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및 현지법인 배당금 현황	13
3.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15
III.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입법례	18
1. 영국	18
가. 개관	18
나. 도입배경	19
다. 제도의 내용	21
라. 기타	31
2. 독일	32
가. 개관	32
나. 제도의 내용	33
다. 기타	37
3. 일본	38
가. 개관	38
나. 도입배경	39
다. 제도의 내용	43

라. 기타.....	48
4. 호주.....	53
가. 개관.....	53
나. 도입 배경.....	54
다. 제도의 내용.....	55
라. 기타.....	57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59
1. 국제비교.....	59
가. 과세면제소득의 범위 및 적용요건.....	59
나. 비용공제 여부 및 범위.....	61
다. 주식양도차익 및 해외지점소득에 대한 과세.....	62
2. 시사점.....	63
가. 과세체계 선택 시 고려사항.....	63
나. 해외원천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66
V. 결 론.....	70
참고문헌.....	72

표 목차

〈표 II-1〉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국제비교	16
〈표 III-1〉 배당과세면제 유형과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24
〈표 III-2〉 독일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변천	33
〈표 IV-1〉 과세면제소득의 범위 및 적용요건에 대한 국제비교	60
〈표 IV-2〉 비용공제규정에 대한 국제비교	62
〈표 IV-3〉 해외자회사주식의 양도차익 및 지점소득과세에 대한 국제비교	63

그림 목차

[그림 II-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3
[그림 II-2]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현황(2003~2010년)	14
[그림 III-1]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 계산사례	29
[그림 III-2] 해외 현지법인의 내부유보액 및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 추이	42
[그림 III-3]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도입으로 인한 합산과세대상 조정	52

I. 서론

-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 시장으로의 투자 및 고용 증대가 재정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종래 선진국들은 제조업 기반을 신흥시장으로 이전하여 싼값에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왔지만, 그 결과 이제는 국내 실업자 증가와 내수 위축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제조업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음
 - －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관련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첨단 제조업체들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 일본도 지난해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이 붕괴될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1년 4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을 30%에서 25.5%로 인하한 바 있음
- 국내로의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법률상 규제 또는 지원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조세제도의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이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국제적 추세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로서 우위를 점하였던 거주지 과세제도(worldwide tax system)에서 원천지 과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를 상당부분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OECD 회원국들 중 26개국 이미 원천지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 일본과 영국은 이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함

○ 이에 따라 미국도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부분적으로 원천지 과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특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은 순수한 의미의 원천지 과세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주로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로 운영하고 있음¹⁾

○ 순수한 의미의 원천지 과세제도라면 국외원천사업소득은 자회사나 지점의 형태에 상관없이 소득이 가득된 때에 과세면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기업에 배당하는 경우에 과세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비배당소득인 로열티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해외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로의 투자 상황이나 고용 여건에 비추어 보면 일본과 같이 산업공동화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조세제도의 측면에서는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내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배당과세면제제도의 내용은 크게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요건과 모회사가 배당의 원천이 되는 사업소득 창출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또한 투자방식에 대한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이익과 지점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관련 제도로서 함께 논의됨

□ 이하 본 보고서는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한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1) Joint Committee on Taxation(2011), p. 8

입법례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를 검토할 때 그 설계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1.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가. 개관

- ☐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거주지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모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한 배당소득분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 반면,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함
 - 내국법인의 지주회사 여부, 자회사의 주권상장법인 유무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에 차이가 있음(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 공제대상 세액의 범위

가) 직접외국납부세액

-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 정부에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 즉,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도 공제대상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나) 간주외국납부세액

-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도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될 수 있음(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하는 경우에 허용됨

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외자회사가 외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²⁾(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함(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2) 공제방법

-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으로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2) 구법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조약 체결 유무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1년 말 세법개정에서 과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있음

- 손금산입방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세액공제방법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① 세액감면 등을 받지 않는 경우

$$\text{공제한도}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text{공제한도}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times \text{감면비율})}{\text{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경우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포함

- 간접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계상되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에도 합산됨³⁾
-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해 계산하며,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⁴⁾

□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이 2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

3) 서면2팀-582, 2008. 4. 1.

4) 국세청 법인 46012-3484, 1999.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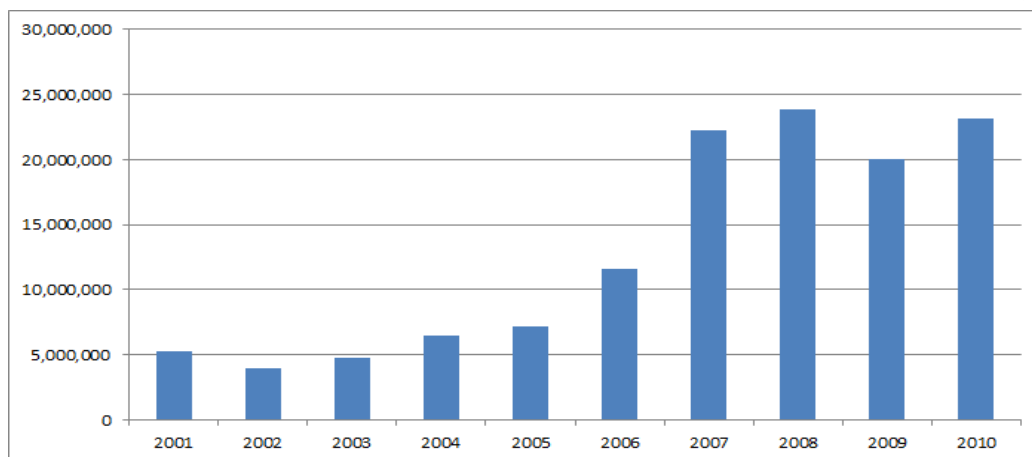
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및 현지법인 배당금 현황

-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2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해외직접투자금액이 증가하여 200억달러를 돌파하였음
 - 2010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에서 전환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스톡 기준으로 2008년 10.3%로 같은 해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인 26.9%(개도국 평균 14.0%)보다 낮아서,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음⁵⁾

[그림 Ⅱ-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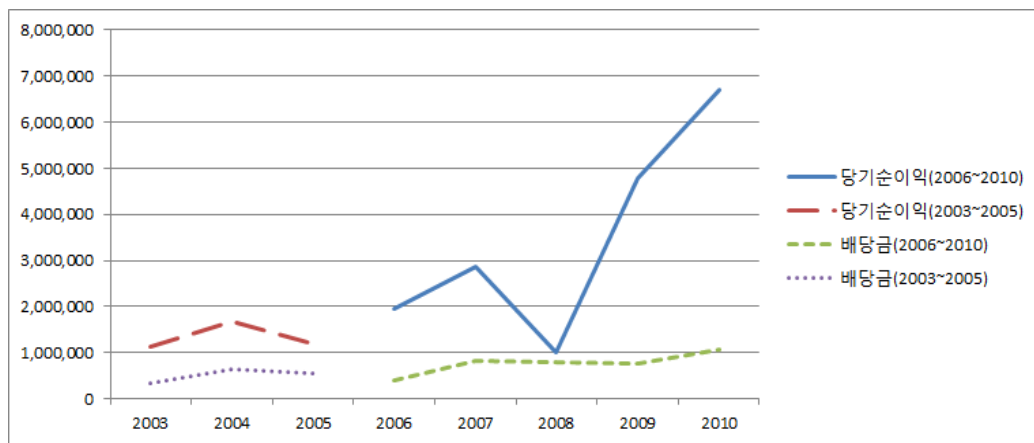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5) 안종석·정재호(2009), pp. 40~41

-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에 있음
-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에 19.4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67.1억달러로 3.5배 증가한 반면, 현지법인의 배당금은 2006년 4.0억달러에서 2010년 10.7억달러로 2.7배 증가함
 - 따라서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배당금 증가율보다 약간 높으며, 현재 추세라면 당기순이익 증가율과 배당금 증가율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 일본의 경우 배당익금불산입제도 도입 전에는 해외 현지법인의 내부유보액 증가율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서, 일본 기업이 해외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유보하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그림 II-2]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현황(2003~2010년)

(단위: 천달러)



주: 2003~2005년과 2006~2010년 표본기업이 달라서 그래프가 연속되지 않음

자료: 수출입은행, 『2005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따라서 국내로 해외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이익을 국내로 회수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분적인 원천지 과세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투자매

력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3.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 역사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 과세제도를 운영하여 왔음⁶⁾
 - 거주지 과세제도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전세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되고,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캐나다는 경제적 특성상 1972년부터 이미 원천지 과세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캐나다의 국내 수요는 제한적이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장려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게 됨⁷⁾
- 그러나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득을 해외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증가함
 - 최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미국 내 과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은 약 1.4조달러(약 1,580조원)⁸⁾에 이르고 있음⁹⁾
 -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

6)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채택함에 있어서, 실제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거주지 과세제도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의 원천지 과세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해외자회사의 능동 소득(active income)을 국내로 송금하기 전까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거주지 과세제도가 아니며, 원천지 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반납용 규정의 형태로 거주지 과세제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원천지 과세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법례들은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데, 주된 방식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거주지 과세제도 또는 원천지 과세제도로 분류되고 있다.

7) Goulder(2011), p. 528

8) 2012. 2. 22 고시환율 기준, 1\$=1,126.00원

9) "Google Joins Apple in Push for Tax Holiday", 2011. 9. 29일자 Bloomberg 기사

은 2001년 대비 약 1.6배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해외 현지법인의 내부유보액은 약 16배 증가하였음¹⁰⁾

– 2001년 대비 2006년의 해외 현지법인 내부유보액은 약 23.5배 증가하였음

□ 이러한 거주지 과세제도의 한계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종전 거주지 과세제도에 원천지 과세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함

○ 원천지 과세제도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은 능동적 사업소득(active business income)만 과세면제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같은 수동적 소득은 국내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¹¹⁾

○ 따라서 대부분 국가들은 능동적 사업소득을 나타내는 배당소득을 해외자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과세면제되는 배당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함

□ 그 결과 현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특히, 일본과 영국은 2009년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를 도입함

〈표 II-1〉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국제비교

유형		국가
거주지 과세제도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
원천지 과세제도	100% 과세면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97% 과세면제	노르웨이
	95% 과세면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자료: Business Roundtable(2011), p. 15

10) 일본 經濟産業省, 「我が国企業の海外利益の資金還流について」, 〈별지 1-2〉, 2008. 8. 22.

11) Deloitte(2011), p. 7

-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들이 증가하고 있음¹²⁾
 - 특히, 일본과 영국이 원천지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에서는 내국법인의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되었음
 - － 많은 해외기업들이 원천지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은 원천지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해외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다고 봄
 - － 또한 현행 거주지 과세제도와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해외자회사의 소득을 해외에 유보하는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국내로의 시설·기술투자나 고용증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따라서 최근 법안들은 내국법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로의 투자증대를 위해 미국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한편, 배당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인세율, 비용공제규정,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설계 방식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¹³⁾

12) 현재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장인 Dave Camp는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고 95% 배당과세면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H.R. 1834: Freedom to Invest Act of 2011)을 발의한 상태이며, 2010년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고 원천지 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13) Ernst & Young(2012), pp. 3~4

Ⅲ.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입법례

1. 영국

가. 개관

- 현재 영국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거주지 과세제도와 함께 원천지 과세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하고 있는 단계임
 -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 － 보유지분이 10% 이상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underlying tax)과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보유지분이 10% 미만인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음¹⁴⁾
 - 원천지 과세제도로서 ‘배당과세면제(dividend exemption)’를 도입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은 영국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배당과세면제제도의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따름
- 영국의 원천지 과세제도는 2009년 배당과세면제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체계화되고 있음
 - 우선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world-wide debt cap)를 신설하고, 국외지점과 세면제제도(foreign branch exemption)를 도입함
 - 그 다음으로 원천지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특정유보소득 합산과

14) HM Treasury and HM Revenue & Customs(2007), p. 9

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 R&D 세액공제, 로열티소득 우대 제도(patent box regime)를 도입함

나. 도입배경

- 영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관을 통한 증권투자도 국제적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
 - 내국법인의 보유지분 중 해외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부터 50%를 돌파하게 됨
 - 또한 경제활동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국적 사업활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급증¹⁵⁾하고 있으며, 신흥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급증하고 있음
- 반면, 조세측면에서 보면 영국은 200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국내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에 직면함
 - 과거 영국의 법인과세 체계하에서 영국은 지주회사 운영에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식되었음
 - －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영국의 법인세율은 평균 수준¹⁶⁾이었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었으며, 조세조약을 통한 강력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임¹⁷⁾
 - 그러나 최근 들어 영국의 국내 투자매력도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떨어지게 됨
 - － 첫째,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함
 - － 둘째, 영국 국세청은 '허용되지 않는 조세회피(unacceptable tax avoidance)' 규정을 위험이 낮은 지역에도 확대하여 적용함에 따라 영국 내의 조세환경이 보

15) UNCTAD에 의하면 국제무역의 3분의 1이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임. HM Treasury and HM Revenue & Customs(2007), p. 8

16) 1999년 기준으로 영국의 명목법인세율은 30.0%(OECD 26개국의 명목법인세율 평균은 32.0%)임. OECD Statistics

17) <http://www.slaughterandmay.com/media/772656/taxation_of_the_foreign_profits_of_companies.pdf>

다 적대적으로 변화됨¹⁸⁾

- 그 밖에도 국제조세법상 변화와 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¹⁹⁾
 - EU 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의하면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EU 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²⁰⁾
 - － 최근 EU 사법재판소는 국내 세법은 회원국들 간에 균형적인 과세권 분배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기업들은 영국이 다국적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현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특정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특히, 2000년에 도입된 공제제한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해외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중·대기업들의 입장에서 행정비용이 크다는 점이 지적됨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영국 정부는 사업하기에 좋은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구축을 목표로 삼게 되었고, 배당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됨
 - 이미 1999년 국세청 보고서에 의하면 세액공제방식을 통한 자본수출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은 다국적기업들에게는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과세면제방식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 － 거주지 과세제도를 따르면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 배당으로 송금되기 전까지 과세할 수 없으므로, 실제에서는 자본수출중립성이 실현되지 않음
 - 특히, 배당과세면제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국내 세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본사에 매력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18) <http://www.slaughterandmay.com/media/772656/taxation_of_the_foreign_profits_of_companies.pdf>

19) HM Treasury and HM Revenue & Customs(2007), p. 8

20) Kayser · Richards(2011), p. 669

다. 제도의 내용

1) 배당과세면제

가) 개관

- 국외원천배당소득 과세면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소기업과 중·대기업을 구분하여 요건이 설정되어 있음
 - 이 때, 소기업이란 직원수 50명 미만인면서 매출액이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1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²¹⁾
 - 다만, 개방투자회사(open-ended investment company), 승인단위신탁(authorised unit trust scheme), 보험회사 및 공제회(friendly societies)는 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 과세면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선택권을 부여한 배경 중 하나는 배당금에 대해 'subject to tax'²²⁾를 요하는 지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0% 또는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영국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²³⁾

나)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배당과세면제요건

- 소기업(small company)이 아닌 기업이 받은 배당금은 다음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21)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EC

22) 원천지 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이전가격의 위장과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거래의 이용을 들 수 있다. 이는 영구적으로 비과세 또는 거의 세금이 없는 상태 즉, 국적 없는 소득(stateless income)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subject to tax' 요건은 국적 없는 소득을 창출하려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면제 요건으로 외국납부세금의 수준을 규정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과세면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Joint Committee on Taxation(2008), p. 38

23) Kayser · Richards(2011), p. 671

경우에는 그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면제됨

- 첫째,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5가지의 ‘면제유형’(exempt classes)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둘째, 세무상 분배금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이자금액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예를 들어,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합리적인 이자의 범위를 넘는 경우 그러한 이자를 분배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음²⁴⁾
- 셋째, 분배금과 관련하여 외국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어떠한 공제(deduction)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 이 규정은 경감세율 대상인 지적재산권에서 발생된 국외원천소득이나 그룹 공제에 따라 과세를 회피하게 된 국외원천소득은 배당과세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함²⁵⁾
- 넷째, 면제유형과 관련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1) 면제유형

- 배당과세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당금이 5가지의 ‘면제유형’(exempt classes)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이러한 면제유형은 조세회피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 과세면제를 적용하겠다는 논리를 반영한 것임²⁶⁾
- 첫 번째 면제대상은 피지배회사(controlled companies)로부터 받은 분배금임²⁷⁾
 - ‘지배’ 여부는 특정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지배(Control)’ 요건²⁸⁾에 따라 결정됨
 -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지분율 합산규정²⁹⁾은 배당과세면제제도에

24) ICTA 1988 §209(2)(d)

25) Sheppard(2011), p. 9

26) Public Bill Committee Debates

27) CTA 2009, §931E

28) FA 2000, Schedule 31; ICTA 1988, §755D

29) ICTA 1988, §755D(6)(c),(d)

적용하지 않음

- ☐ 두 번째 면제대상은 ‘비상환 보통주(non-redeemable ordinary shares)’와 관련한 분배금임³⁰⁾
 - ‘상환가능한(redeemable)’이란 발행조건상 상환을 의무화하는 경우, 보유자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상환할 자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³¹⁾
- ☐ 세 번째 면제대상은 포트폴리오 보유(holdings)와 관련한 분배금임³²⁾
 - 이 유형과 관련한 배당과세면제 요건은 수령인이 발행지분의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수령인이 분배가능이익의 10% 미만을 받을 권한이 있고, 청산 시 분배 가능한 회사 자산의 10% 미만을 받을 권한이 있어야 함
 - 이러한 10% 요건은 보유지분의 종류별로 각각 판단함
- ☐ 네 번째 면제대상은 감세를 의도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배당금임³³⁾
 - 이 유형의 면제는 오직 배당금(dividend)에만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유형의 분배금에는 적용되지 않음³⁴⁾
 - 다만, 배당금의 의미는 배당과세면제 규정에 정의되지 않음
 - 이 유형을 적용하기 위해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을 ‘관련 이익(relevant profits)’과 그 밖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다른 유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금에 대해 ‘관련 이익’ 외의 분배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과세면제되도록 함
 - ‘관련 이익’이란 영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 다른 유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관련 이익’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30) CTA 2009, §931F

31) CTA 2009, §931U(2)

32) CTA 2009, §931G

33) CTA 2009, §931H

34) HMRC, Distribution exemption - draft guidance, 19. Distributions in respect of transactions not designed to reduce tax - Section 931H

간주됨

□ 다섯 번째 면제대상은 부채로 계상되는 특정 지분의 분배금임³⁵⁾

○ 법인세법은 어떠한 지분이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는 경우에 세무상 ‘대출관계(loan relationships)’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³⁶⁾

○ 이 규정에 따라 부채로 계상되는 특정 지분의 분배금은 배당과세에서 면제됨

(2)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 8개의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들 중 4개의 규정들³⁷⁾은 모든 면제유형에 적용되는 반면, 나머지 4개의 규정들³⁸⁾은 특정 면제유형에만 적용되는 규정임

〈표 Ⅲ-1〉 배당과세면제 유형과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면제유형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공통	특정	
피지배회사로부터 받은 분배금	• 공제가 적용되는 분배를 포함한 계획 • 분배를 위한 지급을 포함한 계획 • 특수관계자간 지급을 포함한 계획 • 사업소득 전환을 포함한 계획	해당없음	피지배회사 규정의 위장을 포함한 계획
비상환 보통주 관련 분배금		대출 성격의 계획	비우선주 또는 비상환주를 포함한 계획
포트폴리오 보유 관련 분배금			포트폴리오 보유 규정의 위장을 포함한 계획
감세를 의도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배당금			해당없음
부채로 계상되는 특정 지분의 분배금			해당없음

□ 피지배회사로부터 받은 분배금에 대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³⁹⁾은 배당과세면제

35) CTA 2009, §931I

36) CTA 2009, §521A~521F

37) CTA 2009, §931N~931Q

38) CTA 2009, §931N~931Q

39) CTA 2009, §931J

규정과 CFC 규정에 대한 회피를 대상으로 함

- 지급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인위적인 수익 변경에 대해 CFC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수취인이 지배력을 취득하는 때에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계획을 설정하는 경우 과세면제되지 않도록 함

□ 비상환 보통주와 관련한 분배금에 대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⁴⁰⁾은 상환주나 우선주를 비상환 보통주처럼 가장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 상환주나 우선주와 유사한 권리들을 지분 발행조건에 명시하지 않고 주주에게 부여하도록 계획을 설정하는 경우 과세면제되지 않도록 함

□ 포트폴리오 보유와 관련한 분배금에 대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⁴¹⁾은 인위적으로 10% 요건을 남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관계사들 간에 10% 이상의 지분을 분산하도록 계획을 설정하는 경우 과세면제되지 않도록 함

□ 피지배회사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제외한 다른 유형에 적용되는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인 ‘대출 성격의 계획’ 규정⁴²⁾은 CFC 규정의 적용 없이 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창출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됨⁴³⁾

- 이는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하에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세무상 대출관계로 재분류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임
 - －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는 이 규정에 따라 세무상 대출관계로 재분류되지 않음
- 피지배회사로부터 받은 분배금에 대해서는 항상 CFC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임

40) CTA 2009, §931K

41) CTA 2009, §931L

42) CTA 2009, §931M

43) HMRC, Distribution exemption - draft guidance, 28. Schemes in the nature of loan relationships - section 931M

다) 소기업에 대한 배당과세면제요건

□ 소기업에 대한 배당과세 면제요건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됨⁴⁴⁾

- 첫째, 분배금을 지급한 회사가 적격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 둘째, 세무상 분배금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이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셋째, 분배금과 관련하여 외국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어떠한 공제(deduction)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 넷째, 분배금은 절세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지급되지 않아야 함

□ 배당과세 면제요건 중 적격지역 요건은 지급회사가 내국법인인 경우 또는 지급회사가 영국과 비차별조항(non-discrimination clause)을 포함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지역(이하 ‘적격지역’)⁴⁵⁾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

- 다만, 지급회사가 적격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조약상 요건에 따라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사 즉, ‘제외회사(excluded company)’인 경우에는 과세면제되지 않음

2) 국외원천배당소득과 관련된 비용공제

가) 개관

□ 내국법인에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는 여러 비용공제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이전가격규정, 금지목적 규정(unallowable purposes rule), 조세차익거래 규정(tax arbitrage rules), 그 밖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순서로 적용한 후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특례(world-wide debt cap) 규정을 적용함⁴⁶⁾

44) CTA 2009, §931B

45) 이들 지역 목록은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http://www.hmrc.gov.uk/manuals/intmanual/INTM432112.htm>〉

46) Osborne Clarke(2009), Appendix 2

○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특례는 공제한도를 두는 반면, 나머지 규정들은 공제한도가 없는 차이가 있음

□ 영국 모회사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영국 내의 과세금액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그룹들은 불충분한 ‘이중세액공제’를 동반하는 배당에 대해 추가적인 영국 내 과세를 부담하는 대신 ‘상향 대출’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 왔음

□ 따라서 배당과세면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그룹 내 상향 대출을 제한할 필요성에 따라 비용공제에 대한 제한규정인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world-wide debt cap)’를 2009년에 신설함

○ 이는 내국법인의 금융비용 공제액이 그룹의 전세계 금융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

○ 배당과세면제제도와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를 종합하면, 그룹 입장에서 배당을 통한 자금회수가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⁴⁷⁾

나)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worldwide debt cap)

(1) 적용대상

□ ‘전세계 그룹(worldwide group)’에 속하는 관계그룹사들(relevant group companies)을 적용대상으로 함

○ ‘전세계 그룹’이란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을 포함하며, EU법상 ‘대규모(large)’로 분류되는 그룹을 의미함⁴⁸⁾

– 이는 종업원이 250명 이상인 그룹 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파운드(한화 약 900억원⁴⁹⁾) 이상이면서 한 해 대차대조표 총액이 4,300만파운드(한화 약 770억원) 이상인 그룹을 의미함

47) Moseley & McKenna(2010), p. 127

48) Taxation(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s) Act 2010, §337

49) 2012. 2. 22 고시환율 기준, 1£=1,776원

- 오직 내국법인들만으로 구성된 대그룹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음⁵⁰⁾
- 이 때 ‘관계그룹사들’이란 내국법인(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으로서 전세계 그룹의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이거나 최종 모회사의 75% 자회사로 정의됨⁵¹⁾

(2) 비용불공제액 계산과 배분

- 이 규정은 그룹사들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즉,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이나 영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기준(GAPPs)에 따라 작성된 전 세계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 내국법인의 금융비용(대상금액; tested amount)이 그룹의 전세계 금융비용(공제가능 금액; available amount)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비용은 영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으로 분류됨
 - ‘대상금액’은 순금융비용이 있는 내국법인인 관계그룹사의 순금융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임
 - 순금융비용은 그룹 내·외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금융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의미함
 - 단, 순금융비용이 50만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음
 - ‘공제가능금액’은 그룹 내·외에서 발생한 총연결금융비용(gross consolidated finance expense)을 의미함
- 공제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룹은 불공제액을 그룹 내 내국법인들에 대해 배분할 수 있고, 그룹 내 내국법인들이 받은 그룹 내 금융소득에 대해 대응조정(익금불산

50) Osborne Clarke(2009)

51) Taxation(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s) Act 2010, §345

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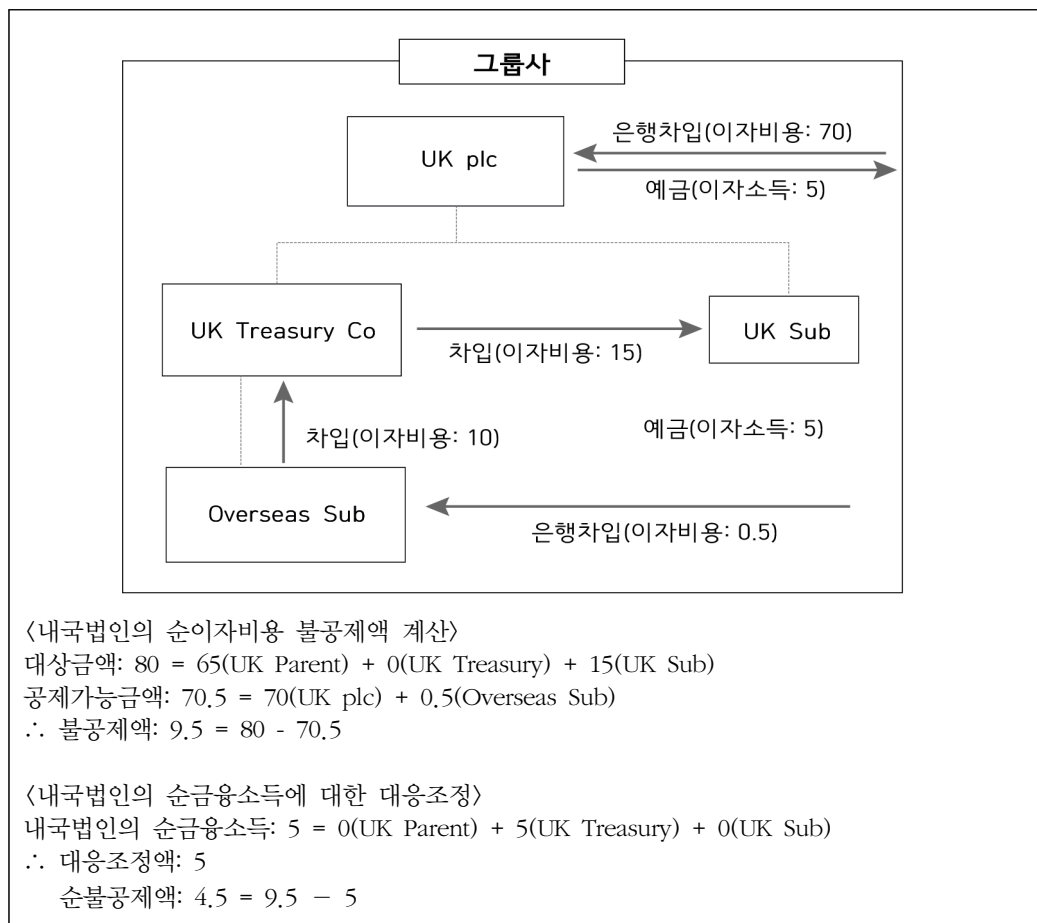
○ 불공제액은 순금융비용이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만 그 순금융비용을 한도로 배분
될 수 있음

– 그룹은 불공제액에 대한 배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불공제액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대응조정은 순금융소득이 있는 법인들에만 가능함

– 순금융소득은 그룹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금융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의미함

[그림 Ⅲ-1]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 계산사례



자료: KPMG, Insight Tax Newsletter, spring 2009, p. 5

(3) 적용제외

- 한 회계연도에 ‘영국 순부채(UK net debt)’가 ‘전세계 총부채(worldwide gross debt)’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입구기준; gateway test)
- ‘전세계 총부채’는 특정 회계연도의 연결그룹 대차대조표에서 ‘관련 부채(relevant liabilities)’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을 의미함
 - ‘영국 순부채’는 순부채를 보유한 내국법인의 특정 회계연도상 순부채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을 의미함
 - 순부채는 ‘관련 부채(relevant liabilities)’에서 ‘관련 자산(relevant assets)’을 공제한 것으로 정의됨
 - 단, 내국법인의 순부채가 300만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영국 순부채’를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순부채를 포함하지 않음

〈적용제외기준〉

$$\frac{\text{그룹의 영국 순부채(UK net debt)}}{\text{그룹의 전세계 총부채(worldwide gross debt)}} < 75\%$$

- ‘적격금융서비스(qualifying financial services)’ 그룹들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적격금융서비스 그룹이란 대출, 보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적격활동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외원천 사업소득 전체가 발생하는 그룹을 의미함
 - 그러나 비금융그룹의 하위그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적용제외대상이 아님⁵²⁾
- ‘그룹재무회사(group treasury company)’에 해당하는 특정회사들에 대해서는 대상금액 계산 시 그 회사의 금융비용과 금융소득을 고려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음
- 그룹재무회사란 전세계 그룹의 회원사로서 그룹의 재무활동(treasury activities)을

52) Moseley & McKenna(2010), p. 127

수행하고, 그 회사의 소득 중 최소 90% 이상이 그룹재무수입(group treasury revenue)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함

- ☐ 또한 그룹 내 조세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금액 계산 시 그룹 내 단기 부채와 관련한 금융비용과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음

(4)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 ☐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에 대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불공제액 감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예를 들어, 적용제외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계획, 전체적으로 불공제액을 줄이기 위한 계획, 적용연기를 위한 연결그룹의 회계연도 변경, 장기부채를 단기부채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대상으로 함
 - 특히, 공제가능금액, 적용제외로서 입구기준, 순금융소득에 대한 대응조정과 관련한 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는 시행규칙에 ‘제외되는 계획(excluded schemes)’을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 이는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정상적인 거래나 조직재편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의도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라. 기타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 회사의 모든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기업(trading companies)⁵³⁾이나 그룹사의 보유지분이 ‘상당 지분보유 과세면제(substantial shareholdings exempt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면제됨⁵⁴⁾

53) <<http://www.hmrc.gov.uk/manuals/cgmanual/CG53007.htm>>

54) FA 2002, §44; TCGA 1992, §192A; FA 2002 Schedule 8,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chedule 7AC

-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보통주를 1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처분 시점에 1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함

2) 국외지점에 대한 과세

- 내국법인은 국외지점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2011년 개정법⁵⁵⁾에 도입된 ‘지점 과세면제(branch exemption)’에 따라 내국법인은 국외지점 수익을 과세면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 단,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모든 국외지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됨
 - 또한 지점 수익에 대한 과세면제를 선택하게 되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점 손실을 공제할 수 없게 됨

2. 독일

가. 개관

- 독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거주지 과세제도와 함께 부분적으로 원천지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독일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세액공제방식에 따라 이중과세의 부담을 경감함
 - 반면, 회사 주주가 받은 국외원천배당소득 중 대부분은 독일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개인 주주가 받은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목적에 따라 구분됨
 - 일반적인 경우에는 25%(solidarity surcharge 5.5% 가산하기 전의 세율)의 세율

55) FA 2011, schedule 13 - Profits of foreign permanent establishments, etc.

로 분리과세되지만, 해당 지분이 사업자산으로 보유된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40%를 과세면제함

〈표 Ⅲ-2〉 독일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변천

	1977년~2000년	2001년~2008년	2009년~
법인 주주	세액공제	95% 과세면제	95% 과세면제
개인 주주		50% 과세면제 (half-income procedure)	투자자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25%의 분리과세 사업자산: 40% 과세면제 (part income procedure)

□ 독일의 배당과세면제제도는 2000년 세제 개정 시부터 도입된 것임

- 2000년 세법 개정은 과세기반을 넓히고 세율을 인하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서 종전의 배당세액공제방식(tax imputation system)을 폐지하는 등 법인과 세 체계를 대폭 개정함⁵⁶⁾
- 한편, 2009년에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자본이득과세를 간소화하기 위해⁵⁷⁾ 개인 주주가 투자자산으로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얻은 배당소득과 단기 주식양도차익⁵⁸⁾에 대해 25%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나. 제도의 내용

1) 과세면제소득

가) 배당금

□ 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지분비율, 보유기간, 자회사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법인세 계산

56) Hey(2002), p. 10

57) Kessler & Eicke(2007), p. 837

58) 단기 주식양도차익은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지만, 부동산재단에 대한 지분은 보유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시 과세면제소득임

- 해당 배당금의 5%를 비용불공제 사업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당금의 95%가 과세면제가 됨
- 다만, 해당 주식이 은행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주식(trading stock)으로 보유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한편, 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영업세(trade tax) 계산 시에도 과세면제소득이 될 수 있으나, 법인세와 달리 지분율 요건과 활동기준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함
 - 첫째, 당해연도 초 기준으로 해당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5% 이상이어야 함
 - 둘째,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총소득 중 수동소득이 15% 이하인 경우에만 영업세 계산 시 과세면제소득에 해당됨

나) 자본이득

- 회사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법인세와 영업세 계산 시 95% 과세면제소득에 포함됨
 - 그러나 조세중립적 사업재편(restructuring)을 통해 해당 지분을 보유한 경우와 해당 지분이 대손처리된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음
 - － 적격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과세이연 거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면제대상이 되려면 해당 처분주식이 과세이연 거래로부터 7년간 보유될 것을 요건으로 함
 - － 또한 지분이 세무상 낮은 계속기업가치로 대손처리되고 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해당 주식이 은행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주식으로 보유된 경우에는 과세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2) 국외원천배당소득과 관련한 비용공제

가) 일반적 비용공제

- 배당금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은 일반적인 비용공제규정에 따라 법인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음
 - 과세면제에서 제외되는 5% 배당금은 과세면제소득과 관련된 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임

나) 이자장벽 규정

(1) 개관

- 일반적인 비용공제규정 외에도 2008년부터 도입된 이자장벽 규정(Zinsschranke)에 따라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는 제한될 수 있음
 - 2007년까지는 법인에 대한 이자비용공제는 과소자본세제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과소자본세제는 ‘earnings stripping rule’로 간주되는 이자장벽 규정으로 대체됨

(2) 공제한도

- 이자장벽 규정에 의해 이자비용은 이자소득금액을 한도로 무제한 공제되며, 이자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EBITDA⁵⁹⁾의 30%까지 공제될 수 있음
 - EBITDA는 과세소득에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이자소득을 빼서 계산함

- 당해연도에 공제될 수 없는 이자비용은 기간과 금액의 제한 없이 차년도로 이월되어

59) ‘법인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EBITDA는 이자 비용을 이익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기업의 실질 이익 창출을 포함하며,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제외함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 주게 된다. 따라서 EBITDA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인다. 또한 EBITDA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 순이익이 상이하게 계산되는 요인(세제 차이 등)을 제거한 후,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활용된다.

그 해의 이자장벽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음

- 이 때 이월공제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5년 내 이전된 지분의 지분율에 따라 이월공제나 손실공제를 제한하는 소유변경규정(change-of-ownership rule)이 적용될 수 있음
 - 5년 내 이전된 지분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이월공제분 전액이 인정되지만, 25% 초과 50% 이하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취소되고,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취소됨

(3) 적용제외

- 이자장벽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으로서 최소기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실체, 지분비교법 규정이 있음
- 첫째, 한 실체의 순이자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에 300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장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순이자비용이 300만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유로에 대한 공제 없이 순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이자장벽 규정이 적용됨
- 둘째, 해당 실체가 그룹에 속하지 않고, 주주에 대해 유해하게 부채를 조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장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어떠한 실체가 그룹사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IFRS 연결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EU회원국의 GAAP상 연결규정이나 미국 GAAP의 연결규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유해하게 주주에게 부채를 조달하지 않은 경우’란 해당 실체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또는 그러한 주주와 관련된 자에게 전체 이자비용의 1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셋째, 지분비교법은 해당 실체가 그룹사인 경우에 해당 지분비율이 전체 연결그룹의

지분비율보다 낮지 않고(2%의 오차가 인정됨), 그룹사의 해외 또는 국내 회원사가 모두 유해하게 부채를 조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됨

- ‘유해하게 부채를 조달하지 않는 경우’란 해당 실체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그러한 주주와 관련자, 또는 이들에 의지하는 제3자에게 전체 이자비용의 1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함
- 연결그룹 내에 지급된 이자는 ‘shareholder financing test’에 고려하지 않음
 - － 해당 실체나 전세계 그룹의 어떠한 회원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비교법이 적용되지 않음

(4) 미공제분

- 당해연도에 실제 순이자비용이 공제가능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미사용된 EBITDA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미공제분은 5년까지 이월됨
 - 다만, 3가지 유형의 적용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이월 미공제분이 발생하지 않음

다. 기타

- 내국법인의 외국 지점소득은 국내법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며, 조세조약상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배당소득·자본이득 과세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자회사 형태와 지점 형태의 차별을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일본

가. 개관

- 일본의 경우 2009년 세제개편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
 - 1999~2011년 기간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30%이고, 소규모기업(자본금이 1억엔 미만이고 자본금 5억엔을 초과하는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기업)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음⁶⁰⁾
 - 소득이 일본과 일본 외의 과세권에서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기타 조세조약에 의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세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거주지 과세제도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원천지 과세제도로 전환하였음
 -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국내 송금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해외자회사배당소득을 모회사의 과세소득 산출 시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면제하는 제도임
- 해외투자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익, 해외지점의 소득, 무형자산 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해외자회사배당에 한해 과세면제방식을 도입한 것임
 - 따라서 해외자회사 주식의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은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60) 일본은 2012년 4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이 30%에서 25.5%로 인하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한시적으로 18%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011년 12월 2일에 동북지진재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다시 한시적으로 인상하였음. 따라서 2012년 4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5년 3월 3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25.5%에서 28.05%로 인상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15%에서 16.5%로 인상됨

- 일본 국내법인이 해외에 있는 관련 기관(member organization)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의 처리는 일본 세법에서 규정하는 해당 기관의 형태에 따라 과세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
 - 법적 실체를 갖는 경우, 일본 세법상 그 자체가 납세의무자임
 - 파트너십 형태인 경우, 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된 이익은 그것이 실제로 국내 법인에게 전달되었고 적격한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대상인 경우 배당으로 간주됨
 - 만일 파트너십이 도관으로 간주되면, 각 개인 회원은 일본 세법상 이익의 지분비율만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됨
 - － 따라서, 분배된 이익은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 지점은 비법인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인의 해외 지점의 이익은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 국내 회사 또는 CFC가 보유한 지적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소득으로 처리되고 해외소득 과세면제(foreign exemption) 대상이 아님
 - － 지적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 규정은 없음
-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에 따르면, 적격 배당의 95%를 과세소득에서 면제함
 - 적용요건은 최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유통주식(outstanding shares)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이 과세면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국회사(foreign company)로부터 수취한 배당이어야 함
 - 이자 또는 로열티와 같은 해외투자소득은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 해외자회사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도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나. 도입배경

1) 해외자회사배당 비과세제도 도입의 의의

- 해외자회사배당 비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적용되었던 간접세액공제제도는 1962년의 세제개정으로 도입되어 최근

까지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로 적용되어 왔음

- 동 세제개정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와 외국세액공제에 대해 현행까지 운영되어 오는 제도의 기초를 만든 개정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본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의 정비와 간접외국세액공제 등의 도입을 포함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정임

□ 1962년의 세제개정은 1955년의 일·미 조약을 비롯한 일본의 조세조약망이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한 시점에 있어서의 조약과의 정합성을 의식한 국내법 정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음⁶¹⁾

- 간접세액공제의 도입은 해외에서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점 형태와 자회사 형태 간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함
- 당시 간접외국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던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 해외시장에의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일본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도 있었음

□ 일본 내에서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쌍방의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세액공제에 의한 조세 계획의 중요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음
- 과도한 절세 사례로 인해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외국세액공제 적정화를 위한 세제개정⁶²⁾은 제도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었음

61) 青山慶二, 「外国子会社配当益金不算入制度の考察」, 筑波ロー・ジャーナル, 2009. 9.

62) (참고) 적정화의 관점에 의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정 경위

1988년(소화63년): 비과세 소득의 2분의 1을 국외 소득으로부터 제외, 국외 소득을 전세계 소득의 90%로 제한, 고율 외국 세액(50%초과)의 고율 부분을,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세액으로부터 제외, 공제 여유액,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1992년(평성4년): 비과세 소득의 국외 소득으로부터의 제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간접세액공제 대상 법인을 외국손자 회사까지 확대

2001년(평성13년): 외국 소득세·법인세의 정의 명확화, 통상 행해지면 인정받지 못한 거래와 관련되는 외국 세액의 제외

- 2009년 세제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⁶³⁾한 것은 국경을 넘는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가 과세면제제도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제과세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지님
 - 이미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법인세법 제23조)
 -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중 일정 부분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와 동일함
 - 그러나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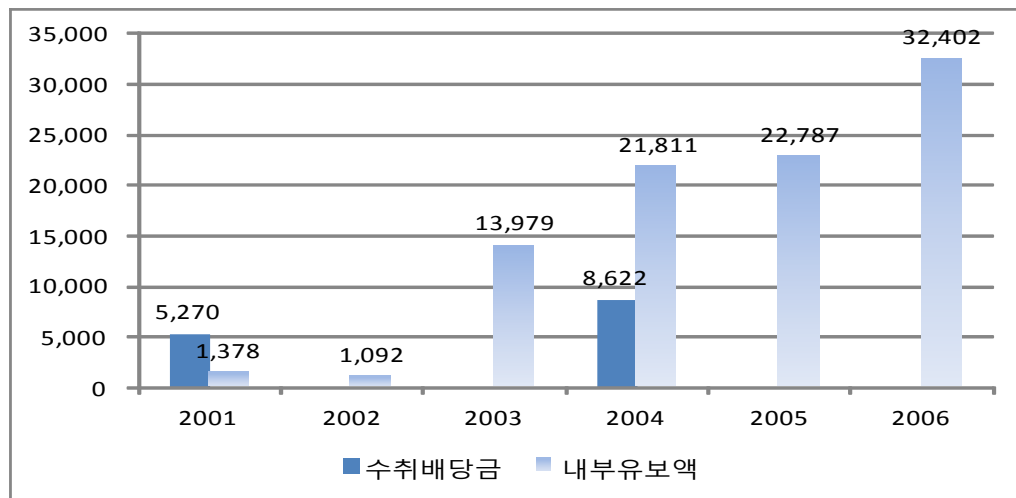
2)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입 배경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8년 8월 「일본 기업의 해외이익의 자금 환류에 대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해외에서의 이익이 일본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최근 해외 유보액이 급증하는 한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 2001년 대비 2004년에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5,270억엔에서 8,622억엔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에 해외 현지법인의 내부유보액은 1,378억엔에서 2조 1,811억엔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음
 - 2001년 대비 2006년의 내부유보액 증가율은 23.5배에 달함
- 동 보고서에서,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모회사에 배당으로서 송금되는 부분은 적고 많

63) 법인세법 제23조의2

은 이익이 해외 자회사에 유보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제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그림 Ⅲ-2] 해외 현지법인의 내부유보액 및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 추이
(단위: 억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진흥과, 「我が国企業の海外利益の資金還流について」, 2008.8.

-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유보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배당으로서 송금하는 경우 송금 시점에 일본에서의 추가 납세가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며, 추가 과세의 원인이 되는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됨
 - 추가 납세를 일으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실효세율 격차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검토 결과, 일본 다국적기업이 일본에서 필요한 사업활동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유보·송금의 선택에 대해 과세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의 해외유보 및 국내 송금에 대한 과세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임
- 2008년 11월 정부의 세금조사회는 외국세액공제제도로부터 자회사배당 익금불산

입제도로의 변경은 ①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에 관한 중립성 확보 및 ② 적절한 이중 과세의 배제를 유지하면서 ③ 제도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추천된다는 의견을 발표 하였고 이로 인해 세제개정안의 기초가 마련되었음

다. 제도의 내용

1) 과세면제 배당의 범위

-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형태로 과세면제함
 -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액 중 5% 상당액을 해당 배당 관련 비용으로 간주 하여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에서 공제함
 - 즉,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채이자 등)은 이미 모회사 에서 손금산입되었을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납세 자에게 이중 혜택을 주게 되기 때문임⁶⁴⁾
- 기업 그룹의 재무상황에 따라 비용이 5% 미만인 경우, 실질금액을 공제하는 것도 고 려하였으나 일반적인 사업 실태를 반영하여 5%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 였음
 - 이는 해외 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이 간접세액공제의 복잡성을 개선 하고자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임
- 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에서 정의하는 배당은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일반적으로 과세 목적상 정의하는 배당을 의미함

64)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5%의 일률공제를 시행하고 있음. 영국은 비용에 대한 개별 대응이 아니라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모회사가 부담하는 글로벌이자 공제 제한의 형태로 제 도를 설계하였음. 이러한 영국의 방식을 “Worldwide Debt Cap”이라 함. 이는 그룹 전체의 부 채금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이자 부담(net base)을 영국 unit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룹 기업의 금융비 용(finance cost)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됨. 일률공제방식이 인 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제율이 실태와 큰 괴리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됨

-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정의하는 해외자회사배당은 일본의 법인세법상 배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의 법인세법상 정의하는 배당으로 함

□ 간주배당 역시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임

- 간주배당은 합병, 분할, 자본환급(return of capital), 조직변경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및 기타 자산의 분배임

□ 주식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배당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자회사의 우선주로부터의 배당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⁶⁵⁾

□ 해외자회사의 주사무소가 등록된 국가의 법에 의해 해외자회사의 배당이 과세소득 산출 시 공제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함

-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지불한 배당이 과세소득 산출 시 공제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이 지불한 배당이 과세소득 산출 시 공제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에 위치한 해외자회사인 경우에도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2) 적용요건

가) 지주비율 및 보유기간 요건

□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에 의한 주식보유비율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즉,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의 25% 이상을⁶⁶⁾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대상이 됨⁶⁷⁾

65)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부분은 외국법인세의 정도에 따라 배당금액이 좌우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간접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배당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66) 법인세법 제23조의2, 동 시행령 제22조의3①

67) 유럽의 경우 5% 정도의 낮은 소유주식 기준으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거나 영국과 같이 소유 주

- 주식보유비율 25%의 판정은 발행제주식 및 의결권주식의 주식 수 또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만족하면 됨
- 연결납세법인의 경우 25% 지분율의 판정은 연결그룹 단위로 판정함

□ 주식보유요건은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으로 정비되어 온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간접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도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또는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배당의 지 불확정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경우임⁶⁸⁾

□ 간접외국세액공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 것은 간접세액공제와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확대·축소 적용할 의도가 없음을 의미함

- 즉, 국경을 넘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배제에 있어서 적용 대상을 변경하지 않고 적용 방법만 간접세액공제방식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크지 않도록 하였음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약에서 규정하는 지분비율을 대신 적용⁶⁹⁾ 하므로 25% 미만의 보유 자회사에 대해서도 간접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음

- 25% 미만의 보유 자회사에 대해서도 간접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는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이고, 10%의 보유비율을 정한 국가는 미국, 브라질, 호주, 카자흐스탄, 15%를 정한 국가는 프랑스임

식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이 각 국가의 제도간에 격차가 존재하지만, 일정 정도는 조세조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그러나 그룹기업의 연결 여부에 따라 불가피하게 각국의 「해외자회사 합산세제」(또는 「조세피난처세제」)나 조세회피부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납세자는 각국 세제의 정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약 상대국의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68) 정재호·구자은·송은주,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9. 8.

69) 일본의 법제상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서도 이러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률상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법령 22조의2 ④)

나) 경과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 해외자회사가 경과세국(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요건인 소유주식의 지분율 요건(소유주식비율 25% 이상)에 관계없이 조세피난처 세제의 합산과세(CFC 세제)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수취 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됨
 - 특정해외자회사 합산과세제도(CFC 세제)에 의해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가 지불하는 배당 전액을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취배당액 100%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 － 수취배당액 100%가 익금불산입되므로 원칙에서 인정되는 5%의 비용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의 소유 주식요건을 채우지 않은 내국법인(소유주식 비율이 5% 이상 25% 미만)에 대해서도 특정과세대상 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수취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다) 요건 충족의 증명

- 이중과세방지 조치 측면에서 볼 때,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는 간접세액공제제도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었음
 - 간접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손자회사를 보유비율(간접 25% 이상)에 의해 선별하고 각 손자회사의 외국세액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는 자회사 요건만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확정신고서에서 익금불산입 관련 해당 배당의 금액 및 그 계산에 관한 명세의 기재가 요구됨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서류의 보존이 요건으로 되어 있음⁷⁰⁾
 - －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자회사로 적격성을 증명하는 것, 잉여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 외에 배당원천징수의 증명 등이 포함됨

7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5

-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은 조세피난처 등의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규정은 배당익금불산입제도의 확실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 과정으로 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확보가 납세순응 차원에서 필요하며, 향후의 조세회피방지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3) 비용공제

- 비용공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달리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 국내법인의 경우, 배당소득 과세면제 대상에 귀속되는 비용의 공제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과소자본세제를 통해 지불이자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⁷¹⁾
 - 일본의 경우, 법인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이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응하는 지불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 단, 법인이 유사 내국법인의 부채비율(debt-to-equity)과 비교하여 타당한 비율을 제시한 경우에는 3배 대신에 제시한 배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세의 처리

- 법인세법 제39조의2는 본제도가 적용되는 배당에 외국의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된 원천징수세는 수취 법인의 과세소득 산정상 손금의 액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71) 과소자본세제란 기업그룹에 의한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모회사로부터의 출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해외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을 많이 함으로써 일본 모회사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임

- 법인세법 제23조의2는 일정한 해외자회사 배당을 일본의 과세권 행사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해당 배당과 관련되는 이중과세 배제를 위해 배당지불액(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면제하는 것임
- 따라서 일본에서 과세권이 없는 해당 배당지불액 총액에 대해 부담한 원천징수세는 일본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고려되는 손금은 아님

5) 간접세액공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는 2009년 4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시행 전에 배당이 지불되어 시행 후에 해당 배당과 관련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음
- 즉, 해당 배당이 구법에 의해 간접외국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취 배당(gross 금액)이 익금산입으로 되고 외국 법인세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이미 신법에 의해 간접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익금산입되었던 배당에 관한 간접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만큼의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넘기는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령·세액 확정의 경우에 대해,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간접세액 공제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라. 기타

1)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은 외국 자회사 배당소득면세의 대상이 아님
- 해외자회사 주식 관련 자본이득은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인 복

잡성과 주식의 매각시점까지 과세가 미루어지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실무적인 문제로는 자본손실과의 관계, 조세회피에 대한 대처, 소득산정의 곤란 등이 있을 수 있음

2) 지점 이익에 대한 과세

- 지점은 비법인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인의 해외지점의 소득은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 제도의 도입 시 해외지점이나 기타 고정사업장(PE)을 통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자회사 형태와 지점 형태는 동일한 자격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여러 측면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우선 해외지점의 소득은 국내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발생시점에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축적이익의 자금 환류 촉진과 무관함
 - 또한 지점이익 산정의 곤란이나 고정사업장 귀속이익의 처리에 관한 OECD 논의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 진출 형태에 자회사와 지점 중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점이익을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수동적 소득에 대한 과세

- 국내 회사 또는 피지배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가 보유한 지적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소득으로 처리되고 해외소득 과세면제 대상은 아님
 - 지적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 규정은 없음

- 수동적 소득은 국제적인 과세제도 추세와 적용상의 어려움, 자금환류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이자나 사용료 같은 수동적 소득은 주로 국내에서 비용이 인식된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고,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임
 - 수동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것이어서, 국내 환류의 시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4) 해외자회사 합산세제의 조정

가) 문제점

- 해외자회사 배당을 비과세로 하는 경우, 해외자회사 합산세제('CFC 세제')가 적용되는 자회사(경과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도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 해외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해외자회사의 유보이익을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었으므로 배당으로 지불된 부분은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었음
 - 그러나 해외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제도를 합산세제 적용대상까지 포함하는 경우, 배당으로 지불된 부분은 합산과세에서도 제외되고 배당의 수취시점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이는 해외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역을 경과세국까지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임
 - 2009년도 개정에서는,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되, 해외자회사합산세제를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 두 제도의 관계를 조정하였음

- 즉, 이러한 조정은 두 제도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고 조세회피 방지 측면은 아님⁷²⁾

나) 경과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합산세제⁷³⁾는 경과세국에 존재하는 해외자회사(특정해외자회사 등, 이하 tax heaven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주주인 모회사의 소득으로 보아 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임
 - 합산세제의 대상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실효세율이 20% 이하인 해외자회사임
 - 단, 경과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실체가 있는 자회사는 합산세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에서는 경과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도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그 대신 종래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내국법인에의 배당분도 유보금액과 합해 합산과세 대상(‘적용대상금액’이라 함)으로 하는 방법이 채택되었음
- 2009년도 세제개정 전에는, 조세회피지역의 자회사가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이익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한편, 배당된 이익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음
 - 그러나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으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면세되므로, 소득을 유보하는 것과 관계없이 조세피난처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음

72) 조세회피세제로서의 해외자회사 합산세제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개정이 있었으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개정내용은 생략함

73) 해외자회사합산세제(조세회피대책세제)는 경과세국(tax heaven)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2009년 세제개정에서 해외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정이 있었고 2010년과 2011년 개정에서도 일부 개정이 있었음

- 합산과세된 경과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100% 익금불산입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과세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본 모회사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점은 개정 전·후에 있어 변경이 없음

[그림 Ⅲ-3]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도입으로 인한 합산과세대상 조정

〈개정 전의 방식〉

(내국법인)		(특정해외자회사등)
국내원천소득		유보금액 (합산대상)
수취배당	← 배당지급	지급배당

〈개정 후의 방식〉

(내국법인)		(특정해외자회사등)	
국내원천소득		유보금액 (합산대상)	합산대상인 } 적용대상 금액
수취배당 (익금불산입)	← 배당지급	지급배당	

- 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의 지분율요건을 만족하는지에 관계없이 해외자회사 합산과세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정과세대상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수취 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됨
 - 특정과세대상금액이란 합산과세 적용대상금액 중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과세대상 금액임
 - － 해외자회사 합산세제에서 비용공제 없이 전액 합산하는 것과의 일관성을 위해 수취배당의 100%를 익금불산입함
 - 해외자회사 합산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내국법인(소유 주식 비율이 5% 이상 25% 미만)에 대해

서도 특정과세대상 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수취 배당이 익금불산입됨

- 특정해외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 제도는 그대로 적용하고 조세피난처 세제를 조정하는 방식 외에, 조세피난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음
 -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제도와 조세피난처세제의 근거법이 각각 법인세법과 조세특별조치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들고 있음
 - － 즉, 법인세법은 원칙대로 적용하되, 특별조치법에서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됨⁷⁴⁾

4. 호주

가. 개관

- 호주의 거주법인은 원칙적으로 전세계소득을 과세대상소득⁷⁵⁾으로 하지만,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방식(exemption system) 또는 외국세액공제방식(foreign tax credit system)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함
- 과세면제방식을 적용하는 해외원천 소득은 비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의 배당 등임⁷⁶⁾
 - 해외법인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호주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부터 수취하는 배당

74) 일본과 동일한 조세피난처세제를 갖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해외자회사배당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제안하는 2009년 세입법에서 일본과 동일한 조세정책을 채택하였음(Finance Bill 2009, Clause 34 Schedule 14 참조)

75) 법인세율은 30%임

76) Deloitte & Touch LLP, *Tax Treatment of Expenses Attributable to Foreign Source Income in Selected Countries*, Deloitte & Touch LLP, 2008, 3, p. 1

- 호주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 능동적 해외지점소득(active foreign branch income)
 - 발생주의 체계(accruals regime)에 의해 이미 귀속된 소득에서의 분배
 - 능동적 사업(active foreign business)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비포트폴리오 지분 관련 자본이득
- 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해외소득은 포트폴리오투자로부터의 배당, 이자소득, 임대소득, 로열티, 해외지점의 과세면제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임
- 해외원천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호주회사가 의결권의 최소 10%를 소유한 비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의 배당과 과거에 과세되었던 소득에서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에 지급된 배당을 포함함
- 이러한 과세면제제도는 법인의 소득은 가득 시점에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고 분배 시점에 주주 단계에서 또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제도임

나. 도입 배경

- 1991년 이중과세의 조정방식으로서의 과세면제방식(exemption system)을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⁷⁷⁾
-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지정국가(listed country)에 거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면제제도를 적용하였음
- 지정국가란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상 유리한 국가를 의미함
 - 즉, 호주에 비해 세제상 유리한 국가가 아닌 국가의 거주법인으로부터의 비포트폴리오 배당은 일반적으로 호주의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고 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
- 2004년에는 과세면제방식의 적용범위에 세제상 유리한 지정국가뿐 아니라 모든 국

77) Deloitte & Touch LLP, 앞의 책, pp. 1~2

가로부터의 비포트폴리오 배당을 포함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

- 과세면제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외국에 투자하는 호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으로부터 이익의 송금을 늘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
 - 적용범위의 확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 적용하던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로부터의 비포트폴리오 배당이 과세면제됨으로써 세부담이 낮은 국가에서 사업(active business)을 수행하려는 유인이 증가하였음

다. 제도의 내용

1) 과세면제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

- 내국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해외원천 소득 중 비포트폴리오⁷⁸⁾ 투자로부터의 배당금 수취분에 대해서는 과세면제하고 있음⁷⁹⁾
- 적용대상은 해외자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국내법인임
 - 즉, 해외자회사의 의결권 주식(비포트폴리오 지분)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호주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과 발생주의 체계에 의해 이미 귀속된 소득에서의 분배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적용함
 - － 해외자회사(non-resident company)라 함은 호주 거주자가 아닌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회사들을 포함함
 - 과세면제 규정은 수탁자 또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수취하는 배당에는 적용하지 않음

78) 비포트폴리오 배당은 배당을 지불하는 회사의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 지불한 배당을 의미함

79) Deloitte & Touch LLP, 앞의 책, p. 1

-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수취배당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 국내의 손실은 해외소득과 상계할 수 있고, 해외자본소득은 국내 자본소득 또는 해외 자본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

2) 비용의 공제

- 원칙적으로 호주에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즉, 비포트폴리오 해외배당과 해외지점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비용은 해당 소득이 호주에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비용도 공제할 수 없음
- 예외적인 규정으로 부채를 조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과소자본 규정⁸⁰⁾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공제를 허용함
 - 즉, 부채비율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될 수 있는 부채 비용의 범위가 일부 제한됨
 - － 부채비율(debt-to-equity)이란 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임
 - － 부채비율 한도는 투자회사가 국내 소재하는 외국기업(inbound)인지 해외에 소재하는 호주기업(outbound)인지에 따라, 그리고 투자회사가 승인된 금융기

80) 과소자본 규정은 직접적인 투자 또는 호주기업을 통한 투자 등에 관계없이 호주 및 호주 이외 국가의 다국적기업 모두에 적용함

- － 과소자본규정에 따라,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inbound)과 해외에 투자하는 호주기업(outbound) 모두의 부채금액을 제한함
- － 주어진 과세연도에 대한 과소자본 규정은 국경을 넘는 투자가 없는 호주거주기업(entities)이나 호주에 투자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 또는 요건(threshold tests)에 부합하는 기업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란 상대적으로 부채공제액이 적은 기업(과세연도에 25만호주달러 미만) 또는 해외투자규모가 적은 기업(foreign controlled가 아니면서 호주 자산이 전세계 자산의 90% 이상인 outbound 투자자)임
- 또한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ies)에 의해 발생한 부채공제는 과소자본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음

관⁸¹⁾인지에 따라 다양함

-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이 부채인지 자본인지의 판단은 경제적 실체 원칙 (economic substance principles)에 따름
- 본 규정에 의해 공제가 제한될 수 있는 비용은 이자지급액과 대출수수료임

라. 기타

1)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 해외자회사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이익(자본이득)은 ① 능동적 사업요건, ② 지분율 요건, ③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세면제 대상임
 - 즉, 해당 주식을 판매한 회사는 반드시 해외에서 능동적 사업(active business)을 수행했어야 하고, 납세자는 회사의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주식 판매 직전 2년 기간 동안 12개월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 해외지점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자본손실은 만일 그 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이익이 과세면제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2) 해외지점소득에 대한 과세⁸²⁾

- 국내법인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외지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면제를 적용함
 - 국내법인이 고정사업장(예를 들면, 지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내법인이 파트너십의 파트너 또는 신탁의 수혜자인 경우로서, 해당 파트너십 또는 신탁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81) 승인된 금융기관(deposit-taking institution)이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고 이자를 지불하도록 승인된 기관으로 예를 들면,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은행, 공제조합(friendly society) 등이 이에 해당함

82) 호주 국세청, *Foreign income return form guide 2010-11*, pp. 69~71

- 호주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및 고정사업장이 벌어들인 능동적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이 조정부정소득(adjusted tainted income)의 성격인지 그리고 회사가 지정국가에 소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⁸³⁾⁸⁴⁾
- 지정국가라 함은 CFC 규정을 목적으로 'Income Tax Regulation 1936'에서 지정한 국가를 의미함
 - － 지정국가로 열거된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임
 - 조정부정소득은 특수관계자와의 판매 및 용역 거래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수동적 소득을 포함함
- 해외지점소득은 지정국가 또는 비지정 국가에서 각각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면제를 적용함

83) Joint Committee, "Background and selected issues related to the U.S. international Tax System and Systems that exempt Foreign Business Income," 2011. 5, p. 16

84) 지정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요건은 ① 지정국가에서 수행된 능동적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고 ① 지점이익이 조정부정소득과 특정양허소득¹⁾이 아닌 소득, 비지정국가에 소재하는 지점에 대한 요건은 ①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고 ② 그 소득이 조정부정소득(adjusted tainted income)이 아닌 소득임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과세면제소득의 범위 및 적용요건

- 국외원천배당소득의 과세면제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영국과 호주는 국외원천배당소득 100%를 과세면제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국외원천 배당소득의 95%를 과세면제하고 있음
- 국외원천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적격요건을 두는 경우와 별도의 적격요건을 두지 않고 모든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적격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으로 구분됨
 - － 조사대상 국가 중 영국과 독일은 특별한 적용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 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 일본의 경우는 25%의 지분율 요건과 6개월의 보유기간 규정을 두고 있고, 호주는 10% 이상의 지분율 요건만을 두고 있음
-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의 소재지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일정 수준의 세금을 실제 부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대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해외자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제도의 도입 시에는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로 적용을 제한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모든 해외자회사로 범위를 확대하였음
 - 영국은 모회사가 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자회사 소재지에 대해 ① 적격지역요건 ②

이중거주자가 아닐 것이라는 두 가지 적용요건을 두고 있음

– 적격지역이라 함은 조세조약체결 국가를 의미함

□ 국외원천배당은 면제제도 적용 시 해당 배당금의 원천소득이 능동적 소득인지 또는 수동적 소득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 있음

□ 조사대상국 중 호주는 능동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독일은 연방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과세면제를 적용하지만 영업세의 경우에는 수동소득이 15%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과세면제를 적용함⁸⁵⁾

〈표 IV-1〉 과세면제소득의 범위 및 적용요건에 대한 국제비교

		영국	독일	일본	호주
과세면제소득의 범위		국외원천 배당소득의 100%	국외원천 배당소득의 95%	국외원천 배당소득의 95% ¹⁾	국외원천 배당 소득의 100%
과세면제 요건	내국법인 지분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5% 이상 ²⁾	10% 이상
	보유기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6개월	제한 없음
	자회사 소재지 요건	– 소기업: ① 적격지역요건 ³⁾ ② 이중거주자가 아닐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⁴⁾	제한 없음 ⁵⁾
	배당의 원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능동적 소득

주: 1) 해외자회사가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경우 합산과세제도에 의해 100%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과세면제소득의 범위는 100%임

2) 25%의 판단은 발행제주식 및 의결권주식의 주식 수 또는 금액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사용

3) 적격지역이라 함은 영국과 비차별조항을 포함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지역을 의미함

4) 지역제한 없이 적용하지만, CFC 세제가 적용되는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요건과 보유요건과 관계없이 배당 익금불산입을 적용함

5) 제도의 도입 시(1991년)에는 특정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로 한정하였으나 2004년 모든 해외자회사로 범위 확대

85) “A comparison of key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s of major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PricewaterhouseCoopers LLP, 2010, p. 6

나. 비용공제 여부 및 범위

- 해외 자회사 배당에 귀속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불공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비용이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조달 비용 우려로 과소자본세제와 같은 다른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일본과 독일은 공통적으로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과세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는 실질적인 비용의 산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수취배당금의 5%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임
 - 추가적으로 일본은 해외자회사의 과다차입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인 과소자본세제를 통해 비용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고 독일은 이자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30%까지 제한하는 이자장벽 규정에 의해 공제를 제한함
- 영국은 이전가격세제(종전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였음)와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worldwide debt cap)를 통해 비용공제를 제한함
 -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란 내국법인의 금융비용 공제액이 그룹의 전세계 금융비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임
- 호주는 모회사의 소득에서 과세면제되는 해외자회사 배당이나 해외지점소득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부채조달비용에 대해서는 과소자본규정을 만족하는 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표 IV-2〉 비용공제규정에 대한 국제비교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비용공제 여부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가능	원칙: 공제불가능 예외: 부채조달 비용 공제 ¹⁾
공제범위의 제한 규정	이전가격 규정	그룹 내 금융비용 산입 특례	이자장벽 규정	과소자본 규정	과소자본 규정
	—	그룹의 전세계 금융비용을 한도로 공제	EBITDA ²⁾ 의 30%까지 이자비용 공제	부채비율 3배 ³⁾	다양한 부채비율 적용

주: 1) 과소자본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2)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3) 유사 내국법인과 비교하여 타당한 비율을 제시하는 경우 제시한 비율 적용 가능

다. 주식양도차익 및 해외지점소득에 대한 과세

□ 해외자회사 주식의 처분손익은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배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영국, 독일, 호주는 해외 자회사 주식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도 해외원천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지분율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 호주는 지분율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에 능동적 사업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요건에 제한 없이 과세면제에 해당됨

○ 일본은 제도의 설계 자체가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이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자본이득과세규정에서도 해외자회사 주식의 처분이익을 과세면제하는 규정은 없음

□ 조사대상국 중 영국과 호주는 해외지점의 소득도 과세면제소득에 포함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과세면제제도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일반적으로 지점을 모회사의 부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해외지점의 소득

을 과세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

－ 즉, 해외지점소득 과세면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호주는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지점의 소득도 과세면제소득에 포함함

○ 독일과 일본은 거주지 과세제도에 따라 해외지점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있음

－ 배당소득 과세면제 규정에 해외지점소득은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지점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면제 규정이 없음

〈표 IV-3〉 해외자회사주식의 양도차익 및 지점소득과세에 대한 국제비교

		영국	독일	일본	호주
해외 자회 사주 식의 양도 차익	과세면제 여부	요건 충족 시 과세면제	과세면제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	요건 충족 시 과세면제
	요건	① 보통주 10% 이상 보유 ② 처분 시 1년 이상 계속보유	없음	—	① 해외에서 능동적 사업 수행 ② 지분을 10% 이상 ③ 판매 직전 2년 동 안 12개월 보유
지점 소득	과세면제 여부	과세면제 선택적용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	요건 충족 시 과세면제
	요건	요건 없음	—	—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것

2. 시사점

가. 과세체계 선택 시 고려사항

□ 우리나라의 법인세 체계는 전세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거주지 과세제도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모회사의 거주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금된 시점에 과세되는 형태이며, 이러한 과세이연(deferral system)의 예외 규정으로 소위 CFC세제라 불리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등⁸⁶⁾이 적용하고 있는 거주지 과세제도(거주지 과세원칙)는 오랜 기간 동안 수출의 중립성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예를 들면, ① 이론적으로는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한 세계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하며⁸⁷⁾, ② 거주지 과세가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③ 거주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함⁸⁸⁾
- 이미 OECD의 많은 국가들이 해외원천 배당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적용하고 있었고, 2009년도에 거주지 과세제도를 기본구조로 유지하고 있던 영국과 일본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원천지 과세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님
- 현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하여 원천지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일단 원천지 과세제도가 지니는 이점은 ①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에 관한 중립성 확보, ② 적정한 이중과세의 배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간소화, ③ 모회사 국가에서 필

86) OECD 회원국 중 거주지 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임

87) 이는 ①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외국납부세액은 한도가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③ 과세이연 등 국외소득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세회피의 기회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정이 모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안종석(2009), p. 61)

88) 안종석(2009), p. 89

요한 현금흐름 확보에 있음

- 해당 국가의 모회사는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의 송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국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의미함
-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자회사배당 과세면제제도는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그러나 원천지 과세제도도 거주지의 세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등의 단점을 지님

□ 제도의 도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제도 도입 후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도 금융위기 이전에 본사배당 비중은 50% 수준이었으나 2011년 본사 배당금이 해외 자회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로 높아졌음

- 일본 재무성의 국제수지통계에 의하면, 2011년 1~9월 중 일본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규모가 2조 7,300억엔(40조원)으로 집계되었고, 연간규모로는 3조 6,000억엔을 웃돌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음⁸⁹⁾
- 이는 2009년부터 일본 기업의 해외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의 95%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⁹⁰⁾

□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 및 고용의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세계 각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영국과 일본이 자본수출중립성을 지지하는 거주지 과세 제도에서 자본수입중립성을 지지하는 원천지 과세제도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결국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

89) 한국경제, 「日기업 해외서 번 돈 열도 송금」, 일본경제신문보도 인용, 2011. 11. 21.

90) 해외수익이 자국 내로 유입된 데에는 엔화가치 상승이나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로 본사에서의 자금수요가 커진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해외 현지법인의 유보액 잔액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2008년 이후 해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로의 배당금 유입 증가는 미미하다는 것을 볼 때, 일본과 같이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 유보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국내 재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임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는 해외자회사의 이익이 필요한 시기에 본국으로 유입되어 재투자되는 데 있어서 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나. 해외원천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1) 과세면제소득의 범위 및 비용공제

- 거주지 과세제도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비용배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원천지 과세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회사 및 자회사의 소득의 원천별로 분리하여 배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면제소득의 창출과 관련된 비용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미 해외원천 배당소득을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용의 공제를 인정하기는 하되, 공제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채이자 등)은 이미 모회사에서 손금산입되었을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

은 납세자에게 이중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액 중 일부는 과세면제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러한 일률적인 비용공제 방식 외에 과소자본규정 및 특별규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해외원천배당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도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채택하여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비용의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배당액의 5%를 모회사에서 공제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면제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음
 - － 일본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5%를 정한 배경으로 단지 독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수준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함
-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일률적인 비용공제 규정이 아니라면, 보다 정교한 비용공제 규정이 필요함
 - － 그러나 지나치게 제도가 복잡해지거나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해외지점소득 및 해외자회사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의 과세처리

□ 외국원천 배당소득 과세면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과 지점소득에 대한 과세처리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해외지점과 해외자회사는 법적 실체는 다르지만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배당은 과세면제되는 반면 해외지점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조사대상국 중 대부분 국가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은 과세면제하고 해외지점소득은 과세면제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해외지점소득도 면제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에는 강화된 원천지 과세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외지점도 별개의 해외자회사로 취급하여 지점소득을 면제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자회사 또는 지점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과세면제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지점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외자회사 주식의 처분손익은 능동적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과세가 적용되는 투자소득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달리 과세할 수 있을 것임
 -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은 해외자회사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과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동일한 과세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3) 국내투자와의 형평성 고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30%(지분율 50% 이하), 50%(지분율 50~100%), 100%(지분율 100%) 익금불산입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제도하에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 간에 과세불균형이 발생함

- 일본의 경우, 해외원천배당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할 당시 이미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100% 과세면제를 적용하고 있었음
 - 따라서 해외원천배당에 대한 과세면제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음

-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국내기업으로부터의 배당과 해외원천 배당 모두 비과세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해외원천배당에 대한 과세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V. 결 론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OECD 34개국 중 26개 국가에 이르고 있어 수적으로는 이미 다수가 채택하고 있음
 - 거주자에 대해 전세계소득과세를 기반으로 해외 납세액을 외국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시스템은 “자본수출중립성” 원칙에 부응하는 제도이고 반대로 국외 소득을 자국 과세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시스템은 “자본수입중립성” 원칙에 부응하는 제도임
 -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촉진되어 자본유출 국가와 자본유입 국가가 혼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본수입중립성을 지지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자국 국적의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경쟁할 때 적어도 불이익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환영받고 있음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하여 거주지 과세제도를 기초로 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하던 영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2009년 해외자회사배당금 과세면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님
- 미국도 2012년 현재, 해외자회사배당의 과세면제의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미국의 경우, 2005년 11월 대통령 세제개혁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 개혁안이 제시됨에 따라 2007년 12월 재무성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음
 - － 그러나 이 제안은 자회사배당에 대한 외국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가격세제 집행에 부하가 걸리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이 강조되었음

- 또한 2008년 양원 세제위원회 보고서에서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외소득면제 방법뿐만 아니라 완전합산방식⁹¹⁾을 비교 검토하였으나 국외소득면제로의 전환 동기는 약해지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세제개혁에서도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외소득면제 방향으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제적인 조세정책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해외투자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최근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제도의 체계와 더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배당소득 과세면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고려하였던 쟁점들을 조사함으로써 정책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91) 미국에서 케네디 정권 이후 주장되어왔던 외국세액공제제도하에서 자회사 이익을 당년도 모회사 소득과 완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참고문헌

- 수출입은행, 『2005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06.
- _____, 『201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1.
- 안종석·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안종석,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9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9.
- 정재호·구자은·송은주,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
- 홍범교·김태훈·마정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 青山慶二, 「外国子会社配当益金不算入制度の考察」, 『筑波ロー・ジャーナル』 6호, 2009. 9.
- 일본 国税庁, 「外国子会社配当益金不算入制度に関するQ&A」, 2010. 1.
- 일본 経済産業省, 「我が国企業の海外利益の資金還流について」, 2008. 8. 22.
- 일본 経済産業省 国際租税小委員会, 「我が国企業の海外利益の資金還流について~海外子会社からの配当についての益金不算入制度の導入に向けて」, 2008. 8.
- Australian Taxation Office, *Foreign income return form guide 2010-11*.
- Business Roundtable, “Taxation of American Companies in the Global Marketplace: A Primer,” 2011. 4.
- Deloitte, “Resetting the code: Issues in corporate tax reform,” 2011. 11.
- Deloitte & Touch LLP, *Tax Treatment of Expenses Attributable to Foreign Source*

- Income in Selected Countries*, Deloitte & Touch LLP, 2008. 3.
- Ernst & Young, "Charting a course on tax reform - considerations of moving the US to a territorial tax system," 2012. 1.
- Goulder, Robert, "Dividend Exemptions Go Viral," *Tax Notes International*, Tax Analysts, 2011. 3.
- Hey, Johanna, "Tax Competition in Europe - The German perspective," European Association of Tax Law Professors Conference 2002(Lausanne), 2002.
- HM Treasury and HM Revenue & Customs, *Taxation of the foreign profits of companies: a discussion document*, 2007.
- HM Revenue & Customs, "Distribution exemption - draft guidance"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Background and selected issues related to the U.S. international tax system and systems that exempt foreign business income," JCX-33-11, 2011. 3.
- _____, "Economic efficiency and structural analyses of alternative U.S. tax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JCX-55-08, 2008. 1.
- Kayser, Margaret and Gary Richards, "Key Practical issues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f business income - UK Branch Report," *IFA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96B, IFA, 2011.
- Kessler, Wolfgang and Rolf Eicke, "Welcome to the German Dual Income Tax," *Tax notes international*, vol. 47, no. 9, Tax Analysts, 2007. 8.
- KPMG, "Insight Tax Newsletter spring 2009," 2009. 3.
- Miyatake, Toshio, "Japan's Foreign Subsidiaries' Dividends Exclusion," Proceedings from the 2009 Sho Sato Conference on Tax Law, Social Policy and the Economy, 2009. 3.
- Moseley, Ben and Caroline McKenna, "The "world-wide debt cap" - a fundamental change to the tax deductibility of finance costs in the UK," *The International Treasurer's Handbook 2010*, Association of Corporate Treasurers, 2010.
- Osborne Clarke, "Reform of Taxation of Foreign Profits: The Worldwide Debt Cap,"

2009. 7.

Sheppard, Lee A., “What Hath Britain Wrought?,” *Tax Notes International*, Tax Analysts, 2011. 1.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hmrc.gov.uk/>>

세법연구 11-07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2011년 12월 23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김재진 · 송은주 · 마정화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1

ISBN 978-89-8191-583-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